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9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진성준 · 임오경 · 김남근
김주영 · 김태년 · 박홍배
정태호 · 민병덕 · 서영석
김영호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사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의2 중 “정기회 개최 전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 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을 <u>정기회 개최 전까지</u> 완료하 여야 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 ----- --- <u>6월 30일까지</u> ----- ---.